

인천지방법원 2021. 2. 25 선고 2020가단24791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소송대리인 B

변론 종결 2021. 1. 28

판결 선고 2021. 2.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93,750,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7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6.5.30. 인천서구D 및 E 각 토지(이하 '이 사건각양도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850,000,000원에 양도하여 원고 산하 북인천세무서장은 C에게 2016. 10.12. 97, 706, 290원, 2016. 11. 11. 96, 730, 760원의 각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고, 2020. 6.8. 현재 281,783,740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C은 2016. 5. 17.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증여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2016. 5.18.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2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C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갖는 자이다. C은 2016.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거나, 기존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다.

피고는 C의 사해의사에 대하여 악의였으므로 피고와 C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21,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는바,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 부동산 가액인 93,75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C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무자력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C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이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의 가액 93,750,000원,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의 기수령 중도금을 포함한 금융재산 164, 352, 006원 합계 258, 102, 006원이었는데 반하여, 이 사건 조세채무는 194,437,050원, 이 사건 각 양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1,460,000,000원으로서 소극재산이 1,654,437,050원에 달하므로,C은 1,396,335,044원의 채무 초과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표〉 원고 주장의 C의 사해행위일(2016. 5. 17.) 당시 채무초과

(단위 : 원)

구 분	내 역		가 액	비 고
적극재산 (①)	이 사건 부동산		93,750,000	매매사례
	금융재산(중도금 수령금액 포함)		164,352,006	
	소 계		258,102,006	
소극재산 (②)	이 사건 조세채무		194,437,050	
	근저당채무(이 사건 양도부동산)		1,460,000,000	
	소 계		1,654,437,050	
순자산(③=①-②)			-1,396,335,044	
사해행위	부동산(④)	이 사건 부동산	93,750,000	
채무초과(③-④)			-1,490,085,044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무자력 계산은 이 사건 각 양도 부동산의 매매대금 채권전액을 적극재산에서 누락한 것으로서 오류가 있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은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68, 664, 956원의 순자산을 보유하고있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그 중 93,750,000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증여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른다거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한다고 보기 어렵다.

<표> C의 사해행위일(2016. 5. 17.) 당시 채무초과 여부

(단위 : 원)

구 분	내 역	가 액	비 고
적극재산	이 사건 부동산	93,750,000	매매사례
(①)	금융재산(중도금 수령금액 포함)	164,352,006	
	이 사건 양도부동산 잔금채권	1,665,000,000 ¹⁾	
	소 계	1,923,102,006	
소극재산 (②)	이 사건 조세채무	194,437,050	
	근저당채무(이 사건 양도부동산)	1,460,000,000	
	소 계	1,654,437,050	
순자산(③=①-②)		268,664,956	
사해행위	부동산(④)	이 사건 부동산	93,750,000
채무초과 여부(③-④)		174,914,956	

1)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C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

별지

1)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5. 30.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잔금을 지급받았다.